

도서관발전방안

民主正義黨
國策研究所 教育文化分科委員會

1. 문제의 제기

「제3의 물결」의 저자 알빈·토폴러는 앞으로의 문맹자는 문자해독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에 접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원화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특히 학문과 기술의 놀라운 발달은 종래의 학교교육에서 얻은 지식만 가지고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응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교육을 하여야 하는 평생교육의 시대가 되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풍부하게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정보능력의 원천으로써 그 존재가치와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전통적인 기능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 연구분석기능,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교육적 기능,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 개발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의 이와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60년대부터 도서관 정책에 관한 획기적 개혁을 단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너무도 낙후되어 있다.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은 명목은 있으나 제대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도서관은 설치와 시설의 미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산부족, 藏書의 질과 양에서의 빈곤, 專門司書職의 활용부진, 운영의 불합리성 등 우리나라 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圖書館政策과 圖書館行政의 부재가 그 근본원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

또한 圖書館法은 1963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의 개정도 없이 방치되어 현대 사회의 다원화된 도서관이 기능과 역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도서관은 기능과 역할, 체제, 운영전반에 걸쳐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신문화 함양의 원동력이 되는 도서관이 그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II. 현황과 문제점

1. 學校圖書館

여기서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초·중·고등학교의 도서관(室)을 말한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자료와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자율적 학습의 습성을 기르고 학습 경험을 심화하여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자기성장과 평생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적·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부대시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나마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55%에 달하는 5,816개교는 아예 학교도서관을 설치조차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입시위주의 점수교육에 치중되고 있어, 설치되어 있는 학교 도서관들도 그 운영 내용(사서교사, 장서, 자료비)이 지극히 부실한 명목상의 도서관에 불과하며 최근 들어 그 수가 감소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84年 : 5,374館, '86年 : 4,758館, 減小 : 616館, 2年間 減小率 : 11.5%

(한국도서관통계, 1986.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첫째, 現行教育法上(제79조 제1항) 司書教師 자격 기준에 1급, 2급의 구분이 없어 승진의 기회가 차단되어 유능한 사서교사들이 도서관을 떠나고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배정이 없고 학도호국단비의 과외활동비 중에서 충당되고 있다.

셋째, 학교도서관이 꼭 필요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사서교사의 TO가 없다.

네째, 학교도서관의 특성상 개관시간은 아침8시~밤10시까지인데 사서교사 한 사람으로선 도서관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실기교사(사서)의 배정문제가 따른다.

學校圖書館數	學校數	圖書館設置率	1館當司書教師數	學生1人當冊數	學生1人當資料費
4,758館	10,574校	45%	0.2人	1.6冊	224원

※ 日本의 경우→ 설치율 : 100%, 學校司書配置率 : 43%

2. 大學圖書館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학술정보의 제공은 대학의 학문연구기능의 수행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질적, 양적으로 빈약하며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大學設置基準令	○學生 1인당 30冊 以上 ○學科當 學術誌種數 10~15種
---------	-------------------------------------

대학경상비에 대한 도서관입비 비율은 평균1.6%에 불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大 학생 1인당 圖書購入費 : 25,300원 東京大 학생 1인당 圖書購入費 : 388,000원

(서울대통계연보 제24집, 1985)

인력구성에 있어서도 1館當 평균 직원수는 10인 미만이어서 업무능률이 저조하고 봉사내용이 미흡하며 그 중에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50%에 불과하며,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도 準司書가 절반을 넘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시설과 장서면에서도 양적으로 학생 정원에 비해 태부족이며 질적인 면도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 그 결과 현재의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의 중추적 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 수	학생 수	1席당학생수	1인당책수	1인당자료비
288館	1,332,000名	6.5名	14.8책	14,358원

(’86. 문교통계연보)

3. 公共圖書館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정보서비스기관으로, 문화활동(강

연회, 음악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중심으로 봉사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의 이용이 저조하다. 그것은 도서관 좌석이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고 운영이 閉架式으로 되어 있어 도서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수는 167개 관으로 1개관당 국민 25만명이 이용해야 할 정도로 그 절대수가 부족하다.

美國 : 27,000명, 日本 : 81,000명, 이란 : 98,000명 (1 個館當)

시·구·군 단위 총240개 행정구역중에 공공도서관이 없는곳이 96개 구역이며 지역간 격차도 심하다.

행 정 구 역		설 치 구 역		미 설 치 구 역	
시	57	47	10		
구	44	30	14		
군	139	67	72		
계	240	144	96		

(공공도서관현황, 문교부. 1986)

장서수는 국민1인당 0.1책에 불과하며, 1관당 평균 장서수는 27,000여책으로 산출되나, 사실상 이 평균치에 미달되는 도서관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으며, 총 예산규모의 영세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중 60% 이상이 인건비에 지출되고 도서관구입비는 9%에 불과하다.

도서관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직원수는 절대 부족하며 특히 전문사서직의 비율이 낮다.

1 館 當				1 人 當	
장 서 수	사 서 직 수	예 산 액	도 서 구 입 비	장 서 수	도 서 구 입 비
27,038冊	4.3人	106,539천원	9,901천원	0.11冊	40원

※ 미국의 경우→1인당장서수 : 2책, 1인당도서관구입비 : 500원(80년)

일본의 경우→1인당장서수 : 0.81책(83년)

도서관 지도감독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다.

- 문교부 시·도 교육위원회 관리(126개관)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관리(38개관)
- 문공부 문화원 도서관(3개관)

4. 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은 한 나라의 문화의 중추이며 정보사회화에 대처하는 國家文獻情報 體系를 統轄할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의 자동화를 주도하고 다른 도서관을 지도육성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이다.

그러나 국가문헌의 網羅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법적조치인 納本制度는 出版社의 협조 부족과 예산 및 규정의 미비로 납본이행이 불완전하다. 또한 현조직과 인력규모로는 문헌정보의 팽창을 감당하기 어렵다.

國家代表圖書館의 藏書量 비교

(단위 : 萬冊)

	미 국	일 본	영 국	호 주	자유중국	한 국
藏 書 量	8,080	550	1,500	360	215	119

(국립중앙도서관조사, 1986)

主要國의 納本制度

	미 국	영 국	카 나 다	한 국
管 轄	議會圖書館	英國中央圖書館	카나다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
特 徵	版權附與	16世紀以後 王命으로 實施	國家管理文獻 番號 附與	圖書館法의 納本 規定에 의함

오늘날 세계각국이 정책적으로 國家代表圖書館制度를 확립하여 문헌정보관리의 자동화기법을 도입, 국가문헌정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도서관의 총력량을 국가발전에 직결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나 미흡하다.

主要國 國家代表圖書館의 컴퓨터比較

	機 種	主 記 憶 容 量	接 續 回 線	百 分 比
美 國	IBM 4404	600萬B	4,000回線	100
日 本	HITAC 450	200萬B	1,000回線	30
韓 國	JAPCOM 4302	51萬B	16回線	0.2

세계적으로는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법의 표준화 등 문헌정보의 국제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예산 및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국

계문헌정보교류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자동화의 후진성으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시스템의 가동은 물론 선진기술정보의 신속한 입수, 공급기능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국제정보화 사회로부터 낙오되고 있다.

국내 각종·각급 도서관들에 대한 지도육성의 기능도 도서관간의 협력체제가 법적, 행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업무자동화 등 기술적인 장치도 강구되어 있지 않아 그 기능의 체계적인 발휘가 사실상 어렵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 관장아래 6과 212명의 부족한 인력규모와 전문성이 결여된 조직의 비합리성, 예산의 영세성 등의 근본문제를 안고서는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현대적 기능과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 도서관 운영실태

공공도서관은 모든 연령층 시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자신의 참고서적과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며, 열람석은 이들의 의해 거의 점령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90%, 국립중앙도서관 70%)

대부분 공공도서관은 직원의 부족과 분실가능성을 이유로 개가식이 아닌 폐가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의 도서자료에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도서관자료 봉사기능의 기본 원칙인 자료의 관외 대출이 부진한 것은 사명감을 가진 전문사서직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

6. 도서관행정

우리나라 도서관의 침체와 국민독서의 부진에는 관계 정책과 행정의 부실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

도서관발전의 방향정립과 운영의 내실화 및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확고하고 일관성있는 시책이 극히 빈약하였으며, 따라서 행정적 통제 및 지도·지원도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서관의 장단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확보, 법체제의 정비, 부실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가 문교부내에 없어, 도서관 행정의 불모상황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 사회교육제도과에서 필요할 때 도서관통계 및 기타 자료의 수집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다른 업무와 함께 실무급 분장사무의 하나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7. 圖書館法

우리나라 현행의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에 제정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23년동안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방치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 걸친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해왔으며 그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도서관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도서관법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도서관계에서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지난 1979년 한국도서관협회가 각계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도서관법 개정 시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현행법의 미비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도서관법 개정의 시급함을 그대로 담고 있다.

첫째, 도서관의 육성은 국가가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며 권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둘째, 도서관 기능의 활성화의 필요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시책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도서관의 전문성이 소외당하고 있으며

네째, 전국 도서관의 조직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도서관 기능의 효율을 높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밖에도 많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는 현행 도서관법은 그 운영에 있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법규가 되고 말았다.

III. 도서관 활성화 방안

1. 도서관법 개정

① 도서관법은 “학술 및 과학기술의 정보원으로써 지식의 신속한 보급기능을 수행하고, 민족문화의 진흥과 국민평생교육의 터전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국가기관시설”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다원적 기능의 도서관 개념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발전육성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도서관법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2. 도서관행정전담부서의 설치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는 도서관에 관한 국가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도서관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는 주체적 역할의 전담부서가 없음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육성의 기본적인 조치로 소관부처인 문교부내에 최소한 「課」단위의 도서관행정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附表3 참조)

3. 전문직에 의한 도서관 운영

사회 각분야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도서관도 전문직 사서에 의해 운영되어야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첫째, 현재 일반행정직으로 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관장은(95%이상) 전문사서직으로 보해야 한다.

둘째, 초·중·고의 학교도서관 중 80% 이상이 사서교사 없이 일반교사가 兼務토록 하고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충원토록 한다. 그리고 유능한 사서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로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는 사서교사가 주임교사를 거쳐 校監講習을 받을 수 있는 진로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셋째, 국가대표도서관은 전문직 부관장제도를 두도록 한다.

네째, 각급 도서관의 인력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다섯째, 사서직 공무원의 상한직급이 현재 4급으로 되어 있어 이를 상향조정(2급까지)하여 전문직제를 확립하고 사서직의 사기를 높인다.

4. 도서관 시설의 확충

교육 정상화의 기본시설인 초·중·고등학교의 도서관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도서관법상 학교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은 중요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 범주에서 분리하고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간이도서관을 개발한다. (예 : 마을문고, 문화원, 유치원, 교회)

지역별 시설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이 없는 96개 시·구·군에 공공도서관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한다. 국가재정 형편상 기업 및 독지가에 의한 도서관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혜택(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5. 도서관장서의 확충

각급 도서관의 내실을 기하고 도서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장서의 질과 양을 「韓國圖書館基準」의 수준에까지 향상되도록 한다.

※ 한국도서관기준 : 각급 도서관의 제반 기준을 1981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정.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제도가 인쇄자료는 물론 非圖書視聽覺資料(예 : Film, Tape, Record 등)까지 확대 강화되어 國家文獻保存史庫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전문도서와 學術誌 확보율을 높인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학생도서비 징수를 제도화 한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학생들의 납입금에서 충당하면서 학교도서관의 운영비는 학도호국단비의 과외활동에서 충당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초·중·고등학교 1인당 월300원 정도를 기성회비나 학교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로 책정한다)

6. 운영의 내실화

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화」를 탈피하여 모든 주민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또한 도서관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실천하도록 한다.

- ① 개가식 운영의 점차적 확대
- ② 자료의 관외대출
- ③ 입장료의 점차적 폐지

④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이동도서관 운영확대 :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이동도서관을(서울 9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도서관의 1년 동안 관외대출량이 전국 공공도서관 관외대출량보다 많을 정도로 운영의 성과가 크다.(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도서관의 생활화)

7. 도서관 상호협동체제 구축

각 도서관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양의 문헌정보자료를 망라하여 수집하기는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각 類型相互間, 同一類型 내의 각 도서관간에 자료의 분담수집 및 공동이용 등 상호협력망을 구축하여 자료의 중복을 피하고 도서관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도서관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 자동화가 전제되어야 한다.(영국의 대영도서관은 전국적인 대여조직망 체제를 확립하여 대출희망자의 요청을 90% 이상 충족시키고 있다.)

8. 재정지원의 확대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운영비 전입금을 확대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운영비는 대학경상비의 일정비율 이상 책정토록 한다.(5% 이상)

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기부금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IV. 장단기 실천사항

1. 도서관법 개정

사회발전과 변화에 부응하는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 발전의 모색과 대두된 현안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을 조속히 개정한다.

도서관발전을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도 아울러 추진한다.

교육법(79조1항),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대통령령 11481호, 별표3), 대학설치기준령(제12조), 서울대학교설치령(제17조), 국립학교설치령(제13조), 조세감면규제법(제49조),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제3조), 공무원임용령(제3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

2. 도서관행정 전담부서설치

도서관 육성기반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기구로서 도서관행정을 전담할 「圖書館課」를

문교부내에 조속히 설치한다.

문교부에 전담부서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서관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에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3. 국가대표도서관의 체제개선

신축건물이전을 계기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현대적인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체제로 개편한다.

조직개편

- 기구확대
- 인원증원
- 관장직급 상향조정
- 전문직 부관장제 도입
- 전문직 비율강화

업무의 전산화

- 국가문헌정보체계 확립(NATIS:National Information System)
- 도서관문헌정보네트워크 편성(각종도서관과 연계)
- 대형컴퓨터도입

4. 독서지도의 교육과정화

국민정신의 바탕을 마련하는 초·중·고등학생의 독서능력과 독서습관을 제고시키기 위해 학교교육에서 독서지도를 강화하여 교육과정화 한다.

5. 이동도서관 운영의 확대

V. 기대되는 효과

1. 국가경제 산업발전의 촉진

도서관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기업 및 學界를 포함한 각 전문분야에 제공하여 연구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의 증진

변천하는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고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증진시킨다.

3. 국민독서진흥과 독서의 생활화

도서관의 생활화가 정착됨으로써 국민독서 기풍을 진작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이룰 수

있다.

4. 민주시민의식의 함양

독서와 도서관을 통하여 교양, 지식, 문화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어 화합과 타협의 정신 및 성숙한 민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다.

5. 교육의 정상화

어려서부터 도서관 이용을 습관화하여 자율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창의력·판단력·사고력을 길러서 전인교육 향상에 기여한다.

6. 문화혜택의 저변확대

도서관이 도서자료의 열람, 대출뿐만 아니라 음악회, 전시회, 교양강좌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문화센터로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린다.

7.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증진

도서관은 국가의 대국민봉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관이다.

영국에서 지방정부 서비스 가운데서 제일 고마운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민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서비스」라고 응답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표 1>

圖 書 館 現 況

(1986. 4. 1 현재)

館種別 구 분	국립중앙	공 공	대 학	학 교	국 회	특 수	계
도서관수	1	166	253	4,758	1	229	5,408
직원 수	207	2,138	2,573	1,989	134	994	7,944
열람석수	2,072	83,050	204,449	371,317	173	8,438	669,499
장 서 수	1,191,081	3,324,260	19,754,083	15,618,466	502,809	4,448,585	44,839,284
연 간 이용책수	1,096,829	9,689,353	16,721,134	18,242,827	268,556	2,407,272	48,425,971
연 간 이용자수	1,457,977	17,681,753	82,721,134	32,978,908	63,327	1,921,634	136,732,405
예 산 (천원)	8,180,759	9,611,254	22,418,177	2,360,353	542,765	8,971,505	52,084,813

〈부표 2〉

各國 公共圖書館 對比表

구분	인 구 수 (천명)	도 서 관 수	장 서 수 (천권)	도서관당 인 구 수	도서관당 장 서 수	1 인 당 장 서 수
미 국	227,700	8,465	439,486	26,928	51,973	1.930
일 본	117,777	1,453	95,118	81,058	65,463	0.808
영 국	55,945	2,295	131,338	24,377	57,228	2.348
프 랑 스	53,713	1,028	50,602	52,250	49,095	0.940
캐 나 다	23,941	791	45,602	30,267	57,651	1.905
스 웨 덴	8,311	408	39,031	20,370	95,664	4.696
덴 마 크	5,123	247	29,512	20,740	119,482	5.761
핀 란 드	4,824	461	26,412	10,464	57,293	5.475
멕시코	69,350	457	2,546	151,751	5,571	0.037
말레이시아	13,390	188	2,419	71,223	12,867	0.181
태 국	46,460	375	1,599	123,893	4,264	0.034
이 란	37,880	385	2,161	98,390	5,613	0.057
티 어 키	44,440	363	5,044	122,424	13,895	0.114
쿠 바	9,720	195	2,719	49,846	13,944	0.280
한 국	41,313	167	4,515	247,383	27,038	0.110

〈유네스코 통계연감.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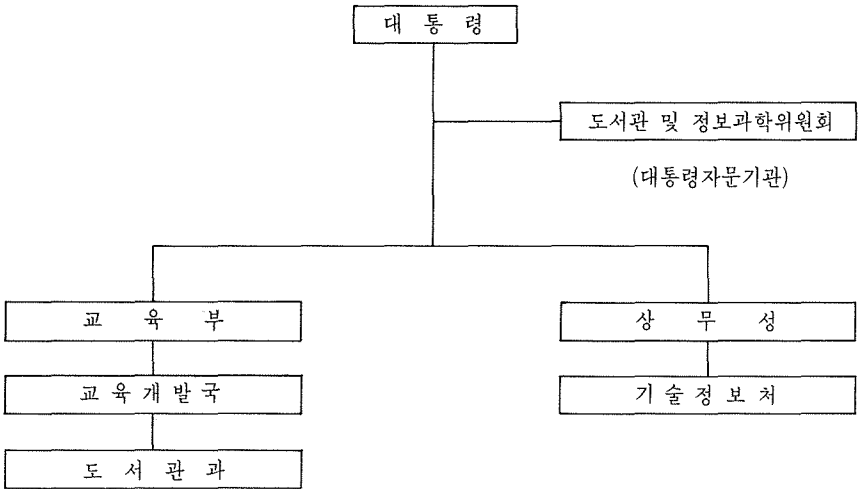
〈부표 3〉

世界 主要國家의 圖書館法 및 圖書館行政專擔部署

國 別	도 서 관 법	행 정 부 서
미 국	도서관건축법 및 봉사법 주별마다 도서관법	도서관·정보과학위원회 (대통령자문기관) 교육부: 도서관과 商務省: 기술정보처
영 국	도서관법 공공도서관법	교육과학부: 도서관국
불 란 서	도서관법 공공도서관법	문화부: 도서관국
덴 마 크	도서관법 공공도서관법	문화부: 공공도서관지도국(의청) 5 개과 본부내 도서관과
일 본	도서관법 학교도서관법 대학설치기준령 국회도서관법 일본과학기술정보센타법	문부성: 학습정보과(전 정보도서관과) 학습정보과(전 사회교육과) 通商産業省: 정보처리진흥과
중 화 민 국	공·사립공공도서관법 전국도서관교육보급법 중국도서관기준령	교육부: 도서관과
한 국	도서관법 대학설치기준령	문교부: 사회교육제도과 (일부기능) 과학기술처: 정보산업기술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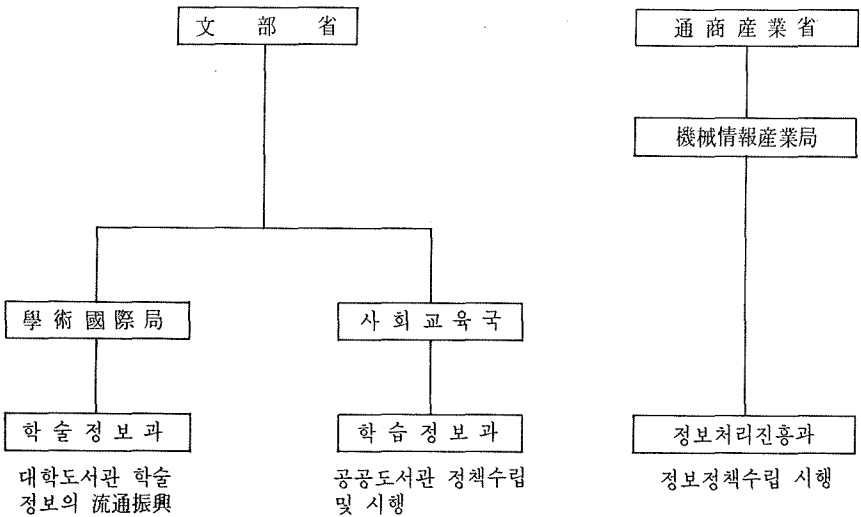
<부표 4>

美國의 圖書館行政體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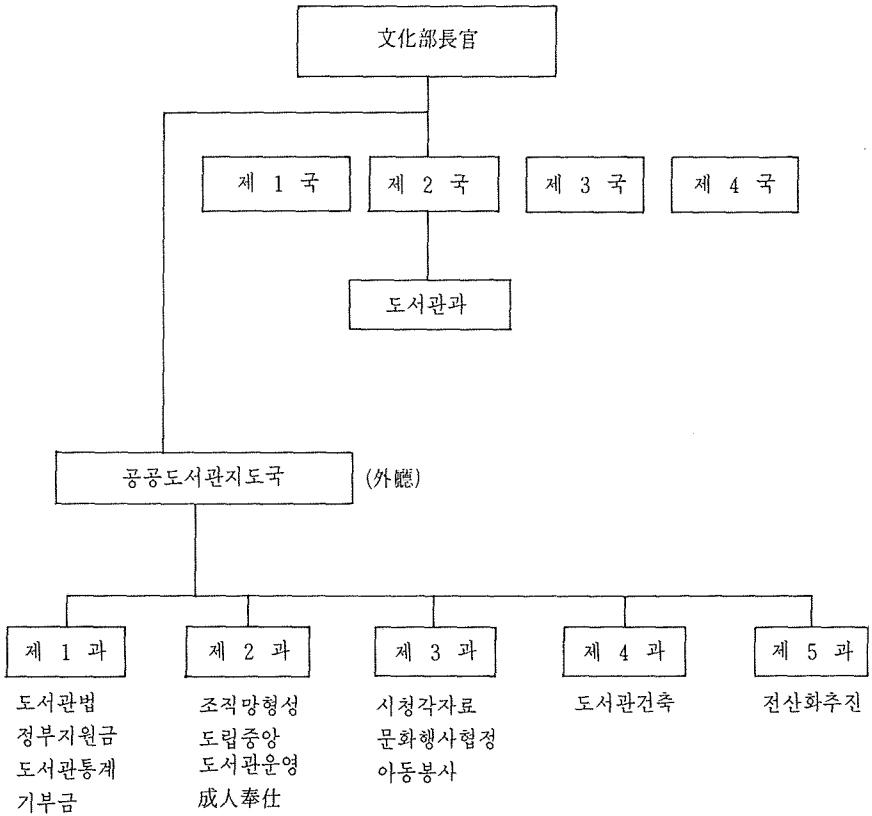
<부표 5>

日本의 圖書館行政體制



〈부표 6〉

덴마크의 圖書館行政體制



미국도서관 및 정보과학위원회 개요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설 립

- 행정부내 독립기관으로 설립
- 교육부는 위원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 능

- 국가차원의 관련정책을 대통령과 의회에 건의
- 각 관종별 도서관 및 정보문제를 연구·조사·분석
- 전반적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기관에 건의할 권한 부과

위 원

- 상원의 승인과 권유에 의해 대통령 임명의 14명 위원과 국회도서관장으로 구성
- 15명 위원중 5명은 도서관 또는 정보과학전문가
- 의장은 대통령이 위원중에서 임명

기 금

- 보조금, 증여금, 기부금 등 국가명의로 접수할 권리 향유
- 재무장관은 접수기금을 위원회 명의로 특별회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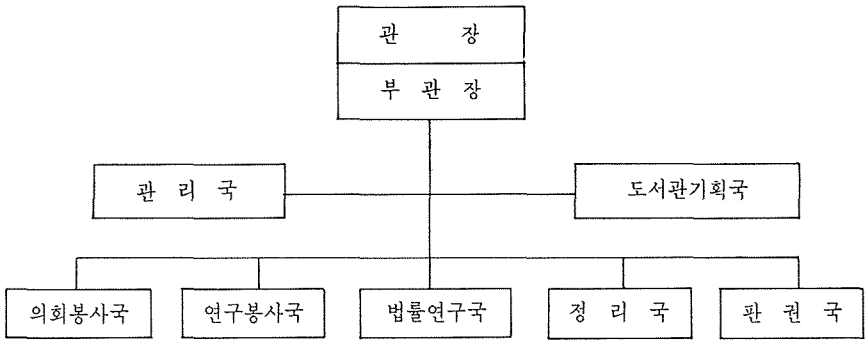
〈附表 7〉 主要國의 國家代表圖書館 比較表

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호 주	자유중국	한 국
조 직	7局 79課	7局 39課	5局 20課	4局 13課	2局 9課	6課
인 원(명)	5,308	847	1,306	645	350	212
장 서 량(책)	8,080만	550만	1,500만	360만	215만	119만
연 간 예 산(원)	2,200억	450억	600억	200억	145억	21억
시 설(m ²) (건 물)	29만	9만	23만	5만	4만	2.3만

〈附表 8〉

主要國의 國家代表圖書館 職制

○美 國



○日 本

